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6-9호

발행일: 2026. 8. 14. (금)

제437회 국회(임시회, 2026. 7. 6. ~ 2026. 7. 31.)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형사사법체계 개편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37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20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1건,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23건, 7월 30일 ~ 31일에 걸친 제3차 본회의에서 2건 등 모두 2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7회 국회 제1차 ~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위반 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7회 국회의 제1차 ~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6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의원 등 12인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의원 등 16인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등 10인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1인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1인
1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1인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1인
14		과학기술기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 등 12인
15	외교통일위원회(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등 11인
16	국방위원회(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7	행정안전위원회(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의원 등 13인
1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등 22인
20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 등 11인
21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2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등 10인
23	보건복지위원회(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의원 등 12인
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1인
25	국토교통위원회(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2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1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형사사법체계 개편

개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함께 담당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경찰에게도 수사개시·진행 권한이 있었지만, 주요 사건의 처리와 종결, 강제수사, 기소 여부 판단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통제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참여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로 논의됐습니다. 당시 논의의 핵심은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찰의 사법적 통제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이후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이 법률에 명시됐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유지돼 근본적인 권한구조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201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명하복적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일정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돼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수사체계가 시행됐습니다. 2022년에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4호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 참조). 그러나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 지연, 검·경 간 사건 왕복, 부실 수사에 대한 통제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논쟁의 중심은 검사의 최초 직접수사권보다도, 기소 여부 판단 과정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 것인지로 이동했습니다. 2025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조직법 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구조가 확정됐습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조직개편 시행 전 국회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던 직접 보완수사 권한과 검사를 수사 주체로 전제한 조항을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 처리의 장기화, 실제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한 강한 반대와 함께 위헌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적법 절차 및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형사사법 단계별로 확충할 것이 요청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익제기·수사기록 열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2026-07-31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법무부)

□ 과제목표

-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공수처의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6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2025. 12. 19.)

□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국경과제)

- (추진단 지원) 수사·기소는 분리하되,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은 유지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 입법례·통계·사례 제공 등 추진단 논의의 토대가 되는 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
- (공익의 대표로서의 검사 역할 재정립)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업무 수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

검찰 업무 현황 및 역점 추진방안

	현황	역점 추진 방안
충실한 공소유지	· 검사 1인 평균 2개 형사재판부 담당 (주 4~5일 재판) · 변화된 공판환경으로 업무 증가	· 1검사 - 1재판부 배치로 공소유지 역량 강화
범죄수익환수 철저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업무범위 확대 · 서울중앙 전담부 신설(18. 2.) 후 추정 실적 제고(551억, 전체 추정액의 36%)	· 독립물수제 도입, 해외 범죄수익환수 강화 · 서울남부·부산 전담부 추가 신설(26. 2.)
공익대표성 강화	· 전담제 실시 중이나 업무 경직으로 전문성 부족 ·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한계	· 공익대표 전담팀 확대 설치 · 유관기관 업무협약, 대국민 홍보로 인식 제고
신속 엄정한 형 집행	· 공판부의 부수업무 ·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을 약 60%로 제고 필요	· 형 집행 전담검사 배치
국가송무 전문성	· 최근 5년간 국가소송 배상신청 건수 증가, 소가 합계 42조 → 검사의 실질적인 소송수행 필요	· 송무사건 전담검사 배치
형사부 실질화	· 접수사건 증가, 처리지연 심각 · 불송치 사건 사법통제력 저하	· 검찰 특화 AI 도입(26.~28. 3개년 계획) · 사법통제 전담부 인력 확충

출처: 법무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안 등: 피해자 형사소송 참가제도 신설 등 2026. 7.

차규근 의원안 등: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관련 조항 정비 등 2026. 7.

김예지 의원안: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에 고발인 추가 2024. 8.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국회의원 정책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회의원 정책자료

각국 검찰청의 수사권 및 경찰과의 협력관계 연구 - 보완수사요구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및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국가수사 거버넌스 재편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검찰개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 수사·공소기관의 분리 및 보완수사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5. 9. 19.

2025. 9. 7. 정부는 수사·공소 관련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화하였다. 발표된 개편안은 영국의 수사·공소기관 구조와 닮아있다. 수사·공소기관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변화들은 수사체계의 마련이 공정성·객관성과 신속성·효율성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찾아가야 하는 어려운 국정과제임을 보여준다. 향후 우리나라의 구체적 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합리적 균형의 고려와 함께 기관 간 관계 정립 및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자료」 2020. 12. 18.

이 연구는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다음은 신설하는 공수처의 기능적 한계를 분석하고 단기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독립수사기구의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검찰청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였다.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 12. 31.

본 보고서는 국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하여 2020/2021 수사권조정/검찰개혁의 성과, 수사·기소의 완전분리안 등에 대해 상세한 설문조사를 행하고, 수사를 경험한 범죄피해자, 경찰, 검사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행하여 2020/2021 수사권조정/검찰개혁의 성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현행 수사 체계·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사·기소의 완전분리’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참조될 수 있는 현행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